

#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81
----------	------

제출년월일 : 2011. 2. 1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도로굴착을 수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 및 중복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지하시설물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각종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관리심의회 기능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라.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 함.(안 제5조)
- 마. 관리심의회 심의·조정한 결과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심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사.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시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굴착사업시행자는 굴착공사 시행 전에 미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12조)

자. 굴착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제출시 전자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며,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시장은 GIS지하시설물의 최신성, 현실성 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갱신 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제정조례안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도로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3조
-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 269조 5호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12. 15 ~ 2011. 1. 5(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방침결정문
- 관련부서에의 의견수렴 반영 결과

# 안산시 도로굴착·복구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도로 복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관리심의회·소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 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해당 시장에게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은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에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 ① 제9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그 외 우기 및 겨울철 굴착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때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때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때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6.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 배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11조(허가의 신청)**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굴착공사시행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임회하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완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굴착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다만,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 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 4의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 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그 밖에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6. 1,000분의 1 수치지도 상에 지하매설물 속성값 입력 자료와 측량사진 자료 [별표1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mm×420mm)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GIS 지하시설물의 최신성, 현실성 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국도 및 지방도의 준용)** 안산시가 위임받은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굴착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 처분과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건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이 태 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리정보담당 이 준 승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준 승 (행정 2438)

#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2081
----------	------

제안년월일 : 2011. 3. 8.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부위원장의 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에 해당하는 각 호에 시의원을 포함함.

## 2. 주요 골자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에 해당하는 각 호에 시의원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 안산시 도로굴착복구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

안산시 도로굴착·복구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운영시간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5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운영시간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시의원(신설)</p> <p>2~6 (원안 1~5와 같음)</p> <p>③ (생략)</p>

# 안산시 도로굴착·복구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도로 복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관리심의회·소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해당 시장에게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은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깊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에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 ① 제9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그 외 우기 및 겨울철 굴착 여부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때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때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때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6.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11조(허가의 신청)**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굴착공사시행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완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굴착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다만,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 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4의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그 밖에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6. 1,000분의 1 수치지도 상에 지하매설물 속성값 입력 자료와 측량사진 자료 [별표1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 [A3(297mm × 420mm)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GIS 지하시설물의 최신성, 현실성 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국도 및 지방도의 준용)** 안산시가 위임받은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굴착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 처분과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